##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이훈기・유동수・김정호

안규백 • 박희승 • 김태선

황 희·박해철·서영교

김선민 · 손명수 · 노종면

양문석 · 문금주 · 김교흥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 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의 제목중 "양곡구입비"를 "급식비"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중 "구입비의"를 "구입비 등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노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나 보조 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7조의2(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이		
	나 경로당에서 노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u>한다.</u>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u>양곡구</u>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급식비		
<u>입비</u>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등의 보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			
곡을 포함한다) <u>구입비의</u> 전부	<u>구입비 등 급식 제</u>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에 필요한 비용의		
<후단 신설>	<u>이 경</u>		
	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원 규모나 보조 비		
	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제37조의4(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생 략)	감면) (현행 제37조의3과 같음)		